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의료관광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근거 조문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10조)
 -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사업의 기획 및 연구, 홍보·마케팅 등 수행
- 센터의 인력 배치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10조의3)
 - 활성화센터 및 안내센터에 필요인력 선발·배치 가능
-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문 내용 개정 (안 제14조)
 - 지원대상을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문 내용 개정 및 신설 (안 제17조)
 - 위탁대상을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 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에서 의료관광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우리 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받은 후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성과를 달성해온 부분도 있으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관광시장이 급변하고 변화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 대비하여 의료관광 특화도시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이에 집행부에서는 전담기관 설치 타

당성 검토 용역 시행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유사한 센터는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전담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으로 우리 구와 같이 구청이나 보건소에 팀의 형태로 직원 2~3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활성화센터의 업무를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의료관광 사업의 기획, 연구 및 수행, 의료관광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홍보·마케팅 등으로 규정하고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배치할 수 있게 하였음.

- 안 제14조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을 현행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에 의료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의료, 보건,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의 업무의 위탁 대상 또한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서 의료·보건·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으로 확대하였음.

○ 검토 결과

- 영등포구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89 호
----------	---------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의료관광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근거 조문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사업의 기획 및 연구, 홍보·마케팅 등 수행
- 나. 센터의 인력 배치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0조의3)
 - 활성화센터 및 안내센터에 필요인력 선발·배치 가능
- 다.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문 내용 개정(안 제14조)
 - 지원대상을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문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17조)
 - 위탁대상을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 위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이하 “활성화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활성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2. 의료관광 사업의 기획, 연구 및 수행
3. 의료관광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제13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3(센터의 인력 배치) 구청장은 활성화센터 및 안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배치할 수 있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의료관광”을 “의료·보건·관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0조(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이하 “활성화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활성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u> <u>2. 의료관광 사업의 기획, 연구 및 수행</u> <u>3. 의료관광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u> <u>4. 제13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u> <u>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u>제10조 (생 략)</u></p> <p><u><신 설></u></p>	<p><u>제10조의2 (현행 제10조와 같음)</u></p> <p><u>제10조의3(센터의 인력 배치) 구청장은 활성화센터 및 안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배치할 수 있다.</u></p>
<p>제1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p>	<p>제1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 -----</p>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의 의료관광 관련 법
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호
울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 의료·보건·관광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

-----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1.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